

전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6948(본소), 2018나6955(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본소), 대여금(반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6948, 2018나6955(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5가단4018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이현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경한

변론 종결 2019. 6. 25

판결선 고 2019. 8. 23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5가단40182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전북완주군 D 답 1, 207m 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1 . 12. 11. 접수 제 628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 하라.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76, 124, 358원과 그 중 28, 109, 177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답 1, 207m 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1 . 12. 11. 접수 제 628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김자림 판사 이슬아